

『리브페이 가맹점』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리브페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 브페이 가맹점 서비스" 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리브페이 가맹점"이란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운영하는 "리브페이 가맹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2. "회원" 이란 본인의 "모바일기기"에 "리브(Liiv) 서비스"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리브(Liiv)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으로, "리브통합결제 서비스" 가입은 "리브"에서 신청하고 "은행"의 승낙을 통해 "은행"과 "리브통합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3. "리브통합결제 서비스"란 "회원"이 "리브(Liiv) 서비스"를 통해 카드 등의 실물매체 필요 없이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4. "리브페이"란 "리브통합결제 서비스"를 통한 거래 중에서 "은행"이 직접 "정산", "지급", "취소" 및 "환불"을 이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5. "리브페이 가맹점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리브페이 가맹점"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리브페이" 거래를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합니다.
- 6. "수수료"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리브페이 가맹점"이 지불하는 이용 대가로, "리브페이 가맹점"과 "은행"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제금액에 대한 백분율 또는 결제 건별 일정 금액 (정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7. "정산"이라 함은 "은행 "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 "수수료" 및 "입금 예정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정보를 "리브페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8. "지급"이라 함은 "은행"이 "정산" 정보에 따라 "입금예정금액"을 "리브페이 가맹점"명의로 국민은행에 개설한 계좌 중 "리브페이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9. "취소"는 거래 당일 "리브페이 가맹점"이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된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회원"의 계좌로 반환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 10. "환불"이란 거래일이 경과한 후 "리브페이 가맹점"이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된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회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 11. "공공기관"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현황 기준) 등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 리브(Liiv) 서비스 이용약관, 리브통합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이용계약을 통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리브페이 가맹점"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이용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수료" 등의 계약 조건에 합의했을 때 성립됩니다.

- ② "리브페이 가맹점"은 서비스이용 신청 과정에서 "은행"이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KB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을 제출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리브페이 가맹점"이 지급 주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관련하여 "은행"과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별도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④ "리브페이 가맹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은행"과 "리브페이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①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리브페이 가맹점"에서 "회원"이 물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에서 정하는 "결제 인증"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온라인 가맹점 결제는 "회원"이 PC 등에서 물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회원"은 가맹점 결제페이지에서 생성된 구매·결제정보를 구매코드입력혹은 QR코드 촬영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호출하여 내역 확인 후 간편비밀번호 등의 방식으로 승인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다만, 최종 결제 여부는 "회원"이 온라인 가맹점을 통하여 확인하여야합니다.
- ③ 모바일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회원"이 스마트폰 등에서 물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회원"은 간편비밀번호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 결제페이지에서 "서비스"에 호출된 구매·결제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승인하면 완료됩니다. 다만, 최종 결제 여부는 "회원"이 모바일 가맹점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회원"이 오프라인 상점 등에서 물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회원"은 간편비밀번호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에 전자적 결제수단(QR코드, 바코드 혹은 NFC 등)을 생성시키고 가맹점은 이를 전자적인 방법(QR코드 혹은 바코드 스캔, NFC터칭 등)으로 인식하여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결제 수단을 가맹점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수단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회원"은 결제가 이루어진 후 "서비스"에 표출된 구매·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결제 정당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과 "리브페이 가맹점"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결제단말기를 통해 "회원"에게 "리브페이" 결제를 제공하거나, "리브페이 가맹점"의 기존 결제 환경에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리브페이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연동 방식 및 기술적지원을 제공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방법) ① "리브페이 가맹점"은 "리브페이" 결제 요청 정보 및 매출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리브페이 가맹점"은 거래 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단말기 또는 별도로 정한 방법을 통해 거래 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리브페이 가맹점"은 대표자 명의의 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자기 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리브페이 가맹점"은 거래 승인이 완료된 경우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고유번호와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등 "은행"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매출전표)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과 "리브페이 가맹점"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악의를 가진 해킹, 피싱 등에 의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 합니다.
- 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리브페이 가맹점"과 "은행"은 부가 혜택 (할인쿠폰, 캐쉬백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리브페이 가맹점"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와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은행" 시스템의 정기점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리브페이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리브페이 가맹점"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원"이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회원"이 결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합니다.

- ② "리브페이 가맹점"은 도박, 폭력, 마약 등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금지합니다.
- ③ "리브페이 가맹점"은 "리브페이"를 제시한 회원에게 결제를 거부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리브페이 가맹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불법 이용자(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시도를 인지하거나 혹은 향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리브페이 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결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8조 (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 ① "리브페이 가맹점"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결제의 결과 및 거래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분쟁 처리



- 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리브페이 가맹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 요청 사항에 대해 "회원" 및 "은행"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 "리브페이 가맹점"은 "취소" 또는 "환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리브페이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 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회원"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은행" 또는 "감독기관"이 해당 거래 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거래 처리 이외에 "리브페이 가맹점"과 "구매자" 혹은 "회원" 간에 발생 가능한 상 거래 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제9조 (결제 취소) ① "리브페이 가맹점"은 "회원"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의 취소, 반품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통한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180일이내까지 "은행"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항의 거래 취소가 "취소"인 경우 "은행"은 반환 대금을 "리브페이 가맹점" 정산 시 제외하며 "회원"계좌로 즉시 이체 합니다.
- ③ 제 1항의 거래 취소가 "환불"인 경우 "은행"은 반환 대금을 "리브페이 가맹점"의 이후 정산금액에서 제외하고, "리브통합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0조(거래대금 입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원"계좌로 이체 합니다.
- ④ "은행"은 정산금액부족 등의 사유로 거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리브페이 가맹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리브페이 가맹점"은 책임을 지고 "리브통합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0조(거래대금 입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원"에게 직접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한 경우, 기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공제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리브페이 가맹점 수수료) ① "리브페이 가맹점"은 "리브페이"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통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수수료"는 가맹점 신청자의 판매 형태와 판매 상품 및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 통지하며, 가맹점 신청자와의 합의 이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③ "은행"은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행정 지도에 따른 수수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조정사유 및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개별통보합니다.
- ④ 제 3항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리브페이 가맹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리브페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리브페이 가맹점"의 이의제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제공합니다.
- ⑤ "리브페이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11조 (거래금액의 "정산" 및 "지급") ① "은행"은 "리브페이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리브페이"거래 내역에 대해서 거래일자로부터 은행영업일 2일 이내에 "리브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리브페이 가맹점"의 "은행" 입금 계좌로 입금 합니다. 단, "리브페이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은행"과 협의 후 지급 일자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은행"은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리브페이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리브페이 가맹점"의 입금 계좌의 수취 불가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은행"은 거래에 대해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단 "수수료" 공제와 관련하여, "리브페이 가맹점"이 "공공기관" 일 경우 "지급"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 징구 할 수있습니다.
- ④ "은행"은 다음의 경우 "리브페이 가맹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리브페이 가맹점"의 불법행위나 사행성 조장 및 도박, 폭력, 마약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의 취급으로 결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2. 서면 또는 통신을 비롯한 "리브페이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
 - 3. "리브페이 가맹점"이 전송한 매출 정보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 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 ⑤ 정산 내역 상에 과/오납을 발견한 경우, 발견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상호 확인 및 검증을 거쳐 "리브페이 가맹점"과 "은행"간 합의된 시점의 정산에 반영합니다.
- ⑥ "은행"은 "리브페이 가맹점"에게 리브페이 결제 거래 승인 내역 등의 정보를 일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웹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정보 제공) ① "은행"은 정당한 "리브페이"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가맹점 승인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경우 "리브페이 가맹점"이 사전에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 동의한 사항에 따라 취득한 "리브페이 가맹점"의 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리브페이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② "은행"은 "리브페이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브페이 가맹점"이 사전에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 동의한 사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 기관,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리브페이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③ "리브페이 가맹점"과 "회원"간 "리브페이"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과 "리브페이 가맹점"은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에 대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수사기관, 조세기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 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3조 (변경사항의 통보) ① "리브페이 가맹점"은 "리브페이 가맹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의 변경 (주소 이전, 판매 품목의 변화, 대표자 변경 등)이 있거나,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에 서면 등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리브페이 가맹점"이 위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리브페이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은행"이 제①항의 변경사항을 이미 알았거나 "은행"의 과실로인해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 "리브페이 가맹점"은 이 "리브페이 가맹점" 계약 명의를 타인에 게 대여할 수 없고, "리브페이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판매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리브페이 가맹점"이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 또는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리브페이 가맹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리브페이 가맹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회원"도 "리브통합결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은행"은 거래불성립 및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리브페이 가맹점"이 동 약관에서 정의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은행"의 개선요구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예정 금액에 대한 지급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④아래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리브페이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리브페이 가맹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분실되거나 도난 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2.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제16조(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동 조항에 적용되는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사항을 준용합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리브페이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다. 예금, 적금 및 부금
 -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바.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 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아. "전통 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자.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차. 기타 도박, 향략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 "지급"받을 법인명의(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의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3. "리브페이 가맹점"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리브페이 가맹점"의 폐업 사실을 서면 통보 받은 경우
 - 4. 부속 서류가 미비한 경우
 - 5.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 6. "리브페이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7.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기관이나 이외 공공기관, 은행을 상대로 다수 혹은 집중적으로 가맹점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위 민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8. "리브페이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 받은 경우
 - 9. "리브페이 가맹점"의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리브페이 가맹점" 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10. "리브페이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리브페이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12.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13.1년 이상 거래가 없어 "리브페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리브페이 가맹점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 ② "은행"은 제 1항의 경우 서비스의 해지 또는 정지 예정일 7일전까지 서비스가 해지 또는 정지되는 사실을 이메일, LMS, 우편 등을 통하여 "리브페이 가맹점" 에게 통지하며, 서비스의 해지 또는 정지 예정일까지 "리브페이 가맹점"이 은행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리브페이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리브페이 가맹점"이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은행"의 승인을 통하여 완료됩니다.

제18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리브페이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은행에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변경 내용을 "은행"에서 지정한 서면, 전화 등을 통하여 "리브페이 가맹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리브페이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 까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리브페이 가맹점"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 영업일까지 "리브페이 가맹점"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9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리브(Liiv) 서비스 이용약관, 리브통합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리브페이 가맹점" 또는 "회원"상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2020.05.27)** 이 약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1.04.19)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1.06.30)** 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2.04.14) 이 약관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